

코미코

협력업체 행동규범

제정 : 2024년 10월

서문

(주) 코미코의 협력업체 행동규범(이하 "본 규정"이라 함)은 코미코의 제품 생산과 관련된 협력사의 모든 국내외 사업장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정규직, 임시직 및 파견 근로자가 존중받는 동시에 환경 친화적이고 윤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 되었습니다.

본 규정은 코미코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원부자재, 부품 설계, 판매, 제조 또는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협력사에 적용됩니다.

또한 협력사는 규범을 준수함과 동시에 해당 협력사에 부품, 조립,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는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코미코는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규범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 인권 및 노동

1) 강제노동 금지

협력사는 모든 구성원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고용조건이 자발적일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2) 차별금지

협력사는 모든 구성원에게 성별,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 고용, 승진, 징계 등의 대우에서 차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아동노동 금지

협력사는 최소 근로 연령에 미달하는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며, 합법적 서류를 통해 취업지원자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4) 근로시간 준수

협력사는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근무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초과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5)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임직원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등 어떠한 비인도적 대우를 금지해야 합니다.

• 안전 보건

1) 산업안전 및 보건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들이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며, 적절한 개인보호 장비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합니다.

2) 비상사태 대응방안

협력사는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며,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3) 육체적 과중 업무

협력사는 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장시간 서있는 업무 등 육체적으로 과중한 작업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통제해야 합니다. 공정개선 순환근무 등의 조치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안전보건교육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제상황에 대비한 안전보건 훈련 및 작업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관련 정보는 근로자가 이해 할 수 있는 언어로 사업장 내에 잘 보이도록 게시해야 합니다.

• 환경경영

1) 인허가 및 보고

협력사는 사업 운영 시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모든 환경 인허가를 취득하여 유지, 관리하며 법규의 최신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유해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거나 제품에 함유된 유해 화학물질의 현황을 파악하고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매부터 사용, 보관, 폐기에 이르는 전 단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된 모든 법규와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대기 배출

협력사는 대기 유해물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작업으로 인해 배출되는 배기 가스를 식별하고, 관리 및 저감활동을 통하여 성실하게 제어하며 오염방지 설비의 처리효율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4) 친환경 경영 프로세스 구축

협력사는 친환경 경영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 윤리경영

1) 사업 청렴성 및 부당 이익 금지

협력사는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 부패행위, 부당이익 및 횡령 등을 일체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수락해서도 안됩니다. 이에 대해 감시 및 단속절차를 이행하여 반부패 법령 자율준수를 실천해야 합니다.

2) 정보공개

협력사의 노동, 보건과 안전, 환경관리 실태,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3)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사는 모든 지식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 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고객사 및 하위 협력사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4)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업무상 관련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5) 내부고발자보호

협력사는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해야 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과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공정거래

협력사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불공정 거래 등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